

『 구미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안 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열악한 농업 현장에서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, 수리 및 원활한 부품 교환과 기술교육을 통한 농기계 순회수리 관련 업무를 명문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농기계 순회수리가 추구하는 목적기능을 명시함(안 제1조, 제2조)
- 부품대 및 수수료를 명시하여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부속품을 공급함(안 제4조)
-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순회수리 관리 및 운영을 명시함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- 「농촌진흥법」 제2조제3항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농산물 수입개방,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가에 대하여 농기계의 수리 및 정비와 기술교육을 위한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을 명문화하여 열악한 농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

- 산간 오지마을 위주로 농기계 수리시 부품원가에 수리를 해주고 10,000원 이하인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어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영농 적기 수리로 농기계 이용율 제고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임.